

□ 안암교육학회 학회지 편집 발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6장 제24조에 의거 본 학회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학회지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회지의 명칭) 본 학회의 학회지 명칭은 “한국교육학연구(*The Korea Educational Review*)”로 한다.

제3조(편집위원회) 학회지의 편집발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4조(발간회수) 학회지는 매년 4회, 3월 30일, 6월 30일과 9월 30일, 12월 30일에 발간한다. (2015.1.1 개정)

제5조(논문 및 원고투고)

1.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별도로 안내하는 학회지 원고 투고 규정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여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송고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되 해당호에 게재되기 위해서는 해당호의 투고마감일까지 투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 긴급투고의 경우 편집위원장이 별도로 정한 기간까지 투고할 수 있다. (2018.4.20., 2026.2.6. 개정)
3. 논문의 주제는 교육학 관련 전 분야로 하며 분량은 30쪽을 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8.4.20 개정)
4. 원고에는 600자 내외의 국문요약(아래에 5개 이하의 주제어 명기)과 영문요약(아래에 Key words 명기)을 첨부하여야 한다. (2018.4.20 개정)
5. 원고 투고 규정에 정한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심사 및 게재를 불허한다.
6. 기타 투고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7. <삭제> (2018.4.20. 개정)

제6조(투고 논문의 심사) 투고된 원고의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은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논문 심사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8.4.20. 개정)

제7조(심사료 및 게재료) 본 학회지에 투고·게재할 원고에 대하여 심사료 및 게재료를 해당회원에게 부과한다. <신설> (2018.4.20 개정)

1.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논문 투고시에 9만원(긴급투고 20만원)의 심사료를 본 학회에 납부해야 하며, 심사료가 납부되지 않은 논문은 심사를 불허한다. (2026.2.6. 개정)
2.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연구비지원을 받은 경우 1편당 40만원, 받지 않은 경우 2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생회원의 경우에는 10만원의 게재료로 이를 갈음한다. 인쇄된 쪽수로 20쪽이 넘는 논문은 1쪽 당 10,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게재료가 납부되지 않은 논문은 논문 게재를 불허한다.

제8조(게재순위) 게재 대상 논문의 수가 적정 편수를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편집회의를 통해 그 게재 순

위를 정할 수 있으며, 해당호에 게재되지 못한 게재 가능 논문은 차기호에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제9조(저작권 이양 및 학회의 저작권 보유) 투고 논문의 책임저자는 저작권 이양동의서(서식2)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학회지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학회 차원에서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과 관련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저작자는 이에 관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지 않는다.
(2019.4.25. 개정)

제10조(표절, 중복게재에 대한 조치) 본 학회에 의해 표절, 중복게재 등의 연구윤리 위반자로 판정된 경우, 윤리위원회는 안암교육학회 연구윤리규정 제7조에 의거해 논문의 투고 및 게재 제한 등을 포함한 필요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2016.05.21. 개정)

<부칙>

① 제9조는 본지 25권 2호부터 적용한다.

□ 안암교육학회 학회지 논문 심사 규정

제1조(심사위원 선정기준) 심사위원은 투고논문 세부전공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선정한다.

1. <삭제> (2018.4.20. 개정)
2. <삭제> (2018.4.20. 개정)
3. <삭제> (2018.4.20. 개정)
4. <삭제> (2018.4.20. 개정)
5. <삭제> (2018.4.20. 개정)
6. <삭제> (2018.4.20. 개정)
7. <삭제> (2018.4.20. 개정)
9. <삭제> (2018.4.20. 개정)
10. <삭제> (2018.4.20. 개정)
11. <삭제> (2018.4.20. 개정)

제2조(심사위원 선정 절차)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1. 편집위원장은 접수 즉시 투고논문의 제목과 요약문을 모든 편집위원에게 송부한다.
2. 각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 가능한 논문의 심사자 명단(직장,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의 연락처 포함)을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단, 1명의 심사자가 심사할 수 있는 논문의 수는 최대 2편으로 한다. (2009.6.20., 2018.4.20. 개정)
3. <삭제> (2009.6.20 개정)
4. 편집위원장은 추천자 명단을 검토한 후 해당 논문 심사에 가장 적합한 3인을 심사자로 선정한다. 적합한 추천자가 부족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직접 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추천자가 3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비심사자로 분류하여 필요한 경우 활용한다. (2018.4.20., 2026.2.6. 개정)
5. 편집위원이 추천한 심사위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해당 편집위원에게 재선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의 요청을 받은 편집위원은 새로운 심사자를 선정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2018.4.20., 2026.2.6 개정)
6. <삭제> (2018.4.20. 개정)
7.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는 심사에서 배제한다. (2019.4.25. 개정)

제3조(심사의 의뢰)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심사의뢰를 완료하여야 한다. (2018.4.20. 개정)

1. 심사위원이 선정되면 1차 선정자에게 유선 혹은 이메일로 수락을 받은 후 이메일로 심사가 가능한 학회 홈페이지 링크를 송부한다. 이메일로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익명처리한 원고와 심사의뢰서를 송부한다. (2018.4.20. 개정)
2. 1차 선정자가 심사를 거절할 시 예비선정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제4조(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심사기준에 따라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재심사, 게재불가의 4단계로 논문을 평가한다(2009.6.20., 2018.4.20., 2023.10.13. 개정)

1. 심사기준

- 가. 연구주제의 참신성
- 나. 연구목적의 명료성
- 다. 연구방법의 적절성
- 라. 논문의 체계성 및 완성도
- 마. 시의성 및 교육학 발전의 기여도

2. 평가단계

- 가. 게재가: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2018.4.20., 2023.10.13. 개정)
- 나. 수정후 게재가: 논문의 핵심내용이 타당하며, 수정 할 내용이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에 한한 것으로 핵심내용과는 무관한 논문(2023.10.13. 개정)
- 다. 수정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사위원의 수정정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재심사를 해야 하는 논문 (2018.4.20. 개정)
- 라. 게재 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문 (2018.4.20. 개정)

제5조(심사결과의 처리)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평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게재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2009.6.20 개정)

1. 심사결과에 대한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18.4.20., 2023.10.13., 2026.2.6 개정)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 종합판정 이후의 후속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2012.7.23., 2018.4.20., 2026.2.6. 개정)

- 가. 종합판정에서 “수정 후 재심사”를 받은 논문은 모든 심사위원의 의견에 대한 심사답변서와 함께 수정 논문을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게재불가” 심사의견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재심사는 1회에 한하고 재심사의 경우 심사위원은 “게재가”와 “게재불가” 중 하나로만 판정할 수 있다. 재심사 결과에 대한 종합판정은 편집위원장이 결

정한다.

나. 종합판정에서 “수정 후 게재가”를 받은 논문은 모든 심사위원의 의견에 대한 심사답변서와 함께 수정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다. 종합판정에서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심사 결과는 익명으로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2009.6.20. 개정)

4. 논문 심사 결과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투고자가 수정 논문을 해당 호 재심사 논문 접수 마감일까지 미제출할 경우 “게재보류” 판정되며, 투고자가 “게재보류” 통보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수정 논문을 재투고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 판정한다. (2020.6.30. 개정)

제6조(심사이의) 논문투고자는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논란이 되는 내용을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012.7.23. 개정)

제7조(심사기한) 각 심사절차의 기한은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8.4.20. 전문개정)

1. 1차 심사는 심사위원 선정 후 21일 이내.
2. 1차 심사에 대한 결과의 처리는 심사 후 4일 이내.
3. 수정내용 심사는 1차 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안이 들어온 후 21일 이내
4. 수정 및 수정내용심사에 대한 결과의 처리는 수정 및 수정내용심사 이후 4일 이내

제8조 <삭제> (2018.4.20. 개정)

제9조 <삭제> (2018.4.20. 개정)